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864
----------	------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13.1.12 개관)은 공정무역 제품 판매, 공정무역 전시·홍보, 체험교실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 시설규모 : 252.88㎡ (판매공간 22.25㎡, 나머지는 교육·전시 등 활용)
- 공간구성 : 공정무역 판매, 교육, 전시, 홍보 공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제한경쟁입찰)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7.9.1 ~ 2020.8.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
 - 공정무역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매, 홍보
 - 방문객 대상 공정무역 소개 활동 (리플렛 등 제작, 배포)
 - 일반시민 대상 정기적인 공정무역 교육 추진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시 갤러리 공간 조성
 - 기업, 카페 등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홍보를 통한 유통채널 확대
- 소요예산 : 없음 (수익창출형)

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

- 공정무역은 제3세계 국가(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근로자 현황 등을 파악하고, 아동노동 금지, 인권존중 등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해당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음.
- 지구마을은 현재 공간사용허가에 다른 공정무역 제품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보, 전시, 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고 공정무역 홍보, 안내, 교육, 판로지원 등 사업 확대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나. 예산조치

○ 세출예산 : 0원

○ 세입예산 : 예상 수입 및 사업비 등 계정하여 산출 예정

※ 최근 3년간 지구마을 임대료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14년	201,410천원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252.88㎡)
2015년	201,410천원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252.88㎡)
2016년	28,972천원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22.25㎡)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장호진 (☎ 2133-5486)